

【 신용거래 약관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 】

개 정 전	개 정 후	비 고
<p><별첨> (9) 제 10 조 제 6 항의 "<별첨>에서 정하는"시간은 다음과 같다.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:30까지</p>	<p><별첨> (9) 제 10 조 제 6 항의 "<별첨>에서 정하는"시간은 다음과 같다.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:40 까지</p>	<p>거래소 매매거래 시간 개편에 따른 시간변경</p>
<p><신 설></p>	<p>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부칙 추가</p>